

필기시험 감독관 준수사항(제9조 관련)

1. 감독관은 시험실시 5분전에 입장하고 종료 후 5분 이내에 퇴장하여야 한다.
2. 감독관은 수험생을 소정좌석에 착석케 하고 수험생 준수사항을 지시한 다음 수험인원을 확인하여야 한다. 또한 수험생 준수사항 중 제5,6항 및 감독관 확인이 없는 답안은 무효임을 고지하여야 한다.
3. 시험개시와 동시 응시자를 대조 확인하여 대리 시험 등 부정요소를 제거하여야 한다.
4. 수험생 중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장 조치하고 적발보고서를 작성 수험시간 종료즉시 인재개발과장에게 경유하여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그 밖에 지시사항 위반자는 적발 보고한다.
5. 문제 내용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하여서는 안 되며 감독관이 문제지를 보고 있거나 수험자가 작성하는 답안내용을 보고 있는 등 감독업무를 소홀히 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된다.
6. 수험생중 퇴장하거나 이석한 자는 다시 입장을 금지시키며 수험 장소 내에게 흡연, 잡담, 물품대여를 일체 금지한다.
7. 시험종료 즉시 회수한 답안지 및 문제지는 포장 날인하여 인재개발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.